

〈별표21〉 특정감염병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감염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3.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4.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5. 페스트	A20
6. 신생아파상풍	A33
7. 산과적 파상풍	A34
8. 기타 파상풍	A35
9. 디프테리아	A36
10. 백일해	A37
11.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2. 일본뇌염	A83.0
13. 홍역	B05
14. 풍진	B06
15. 볼거리	B26
16. 탄저병	A22
17. 브루셀라병	A23
18. 랙토스피라병	A27
19. 성홍열	A38
20. 수막알균수막염	A39.0
21.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2. 재향군인병	A48.1
23.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2
24. 발진티푸스	A75
25. 광견병	A82
26.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7. 열대열원충말라리아	B50
28. 삼일열원충말라리아	B51
29. 사일열원충말라리아	B52
30. 기타 기생충학적으로 확인된 말라리아	B53
31. 상세불명의 말라리아	B54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감염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